『2018년도 부천대학교 사업장폐기물 위탁 운반·처리 용역 단가 계약』

과업지시서

2017. 12. 27.



과업지시서

- 1. 사 업 명 : 2018년도 부천대학교 사업장폐기물 위탁 운반·처리 용역 단가 계약
- 2. 사업 기간 : 2018. 01. 04.(목) ~ 2019. 01. 03.(목) (12개월)

3. 사업 내용

가. 목적

1) 폐기물관리법, 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, 시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를 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재활용을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나. 폐기물 운반 및 처리(작업)

- 1) 폐기물 운반 시간은 매일 06:00부터 12:00까지로 하되 경우에 따라 "갑"의 요구에 의해 연장 및 변경 할 수 있다.
- 2) "을"은 작업에 필요한 작업인원, 장비의 일체를 책임진다.
- 3) "을"은 작업에 필요한 폐기물 수집통(11톤 박스, 리프트 통 등)을 제공하여야 한다.
- 4) "갑"은 "을"의 작업 중 "을"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, 줄입 및 통행, 기타 제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한다.
- 5) "을"은 "갑"에게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지역별, 계절별, 발생량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수집하여,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며, 수집·운반 장비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한다.
- 6) 폐기물 수거는 1주 3회 수집·운반함을 원칙으로 하되 천재지변(하절 기 우천, 동절기 폭설 등)으로 인해 수거가 불가 할 시는 쓰레기 수거 일을 변경 할 수 있으며, "을"은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대책을 협의해야 한다.
- 7) 운반 업체는 올바로 시스템 전반 업무처리 대행한다.

다. 수거 범위 및 처리

- 1) 폐기물의 수거범위는 일상생활과 영업활동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한하여 "갑"은 재활용과 일반쓰레기로 분리 배출하여야한다. 특히 "을"은 건축폐기물, 병원폐기물 등, 기타 지정폐기물은수거치 않는다.
- 2) "갑"은 일반 생활계 폐기물을 적절한 용기에 담아 사업장내의 쓰레기 하치장에 운반한다.
- 3) "을"은 일반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에 맞게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 다.
- 4) "을"은 폐기물 수거시 수거량을 "갑"에게 통보하고 "갑"은 일반 폐기물 처리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기록 유지한다.
- 라. 연간 예상 배출량 : 140톤(2017년도 139톤)
- 마. 작업 장소(북문 통행)

